

진보과정 규정

(제24차 개정 2015. 10.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헌장 제2조(훈육목표) 및 제3조(기본원칙)에 의하여 청소년들에게 스카우트 방법에 의한 발전적인 진보과정을 주어 유용한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 방법) ① 컵스카우트 대원의 진급과정은 연령에 따라 컵스카우트 교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04. 12. 16.)

② 스카우트의 진급과정은 스카우트 교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스카우트 생활의 촉진

가. 반과 대의 활동 등 제 집회에 80%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나. 반의 모든 일에 협동하여 일해 나가도록 지도한다.

다. 반과 대의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자연적으로 진급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도한다.

2. 스카우트 기능의 연마

가. 야외에서 가정에서와 같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스카우트 활동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원들이 훌륭한 하이커와 캠퍼가 되게 지도한다.

다. 스카우트 활동을 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실천하면서 배우도록 지도한다.

라. 반과 대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한다.

마. 스카우트 기능장은 95종이며, 이 가운데 필수기능장은 시민장, 하이킹장, 응급처치장, 야영장, 전통예절장, 안전장, 야외취사장, 수영장, 개척장, 환경보전장, 측정지도장, 학업장, 세계우애장, 구조장, 생존장 등 15종이다. (개정 09. 12. 11.)

3. 스카우트 정신의 함양

가. 항상 스카우트 규율을 실천함으로써 신체적으로는 건전하며, 도덕적으로는 강직하도록 조력(□□)한다.

나. 자립 독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도록 지도한다.

③ 벤처스카우트 대원의 진급과정은 스카우트 교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04. 12. 16.)

1. 스카우트 생활의 촉진

- 가. 조(□)와 대의 활동 등 제 집회에 80%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나. 벤처스카우트 기본활동 영역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조력한다.
- 다. 대원의 자기 도전 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조력한다.
- 라. 벤처스카우트 활동을 해나가는 동안 자연적으로 진급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도한다.

2. 스카우트 기능의 연마

- 가. 일상생활에서 불편 없는 생활인이 되도록 조력한다.
- 나. 하이커와 캠퍼의 기능인이 되도록 조력한다.
- 다. 연구위원회의 활용과 특수활동, 과정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기능과 경험을 제공한다.
- 라. 조와 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한다.

3. 스카우트 정신의 함양

- 가. 스카우트 선서와 규율을 실천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도록 지도한다.
- 나. 자립독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도록 지도한다.

④ (삭제 99. 12. 17)

제3조(업무의 관장) 대원들의 진급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장한다.

① 컵스카우트

- 1. 컵스카우트는 연령별 진급이며, 진급과정은 해당 급위 대장의 지도와 확인으로 이수한다.
- 2. 컵스카우트 취미장은 대장이 승인하여 취득한다.

②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개정 04. 12. 16.)

- 1.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진급은 대장의 지도와 고사 및 인정에 따라 면접위원회가 인가 처리하고 보고서는 지구연합회 경유, 지방·특수연맹에 제출한다. (개정 09. 11. 13.)

다만,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범스카우트 진급에 관한 면접은 지방·특수연맹 면접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며, 중앙본부가 인가한다. (개정 09. 11. 13.)

- 2.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대원의 기능장 취득업무는 대장 또는 기능장 상담강사가 지도 면접하고, 대장이 인가 처리하며, 지구연합회를 경유하여 지방·특수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 10. 1.)

(진보과정 규정)

- ③ (삭제 04. 12. 16.)
- ④ (삭제 99. 12. 17.)

제4조(대원 진급의 구분) 부문별 대원 진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컵스카우트 진급 구분 (개정 15. 7. 2.)

급위	급위 명칭				
	다람쥐	토끼	사슴	곰	무지개
연령	6~8세	8~9세	9~10세	10~11세	11~12세

- ②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진급구분 (개정 04. 12. 16.)

급위	초급	2급	1급	별	무궁화	범
수련 기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 ③ (삭제 04. 12. 16.)

제2장 컵스카우트 진보과정

제1절 진급과정

제5조 준비과정

- ① (삭제 15. 7. 2.)
- ② (삭제 15. 7. 2.)

제6조(다람쥐 과정)

- ① 다람쥐과정은 만 6~8세의 소년, 소녀들에게 주어지는 기준과정으로써 10개의 취미장 활동을 마치도록 권장하며,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개정 15. 7. 2.)
- ② 컵스카우트 다람쥐대원은 다람쥐기장을 달고, 대장의 지도하에 소정의 다람쥐과정을 이수한다.

제7조(토끼 과정)

- ① 토끼과정은 만 8~9세가 된 소년·소녀들에게 주어지는 기준과정으로써 10개

(진보과정 규정)

과목의 취미장 활동을 마치도록 권장하며,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개정 15. 7. 2.)

② 컵스카우트 토끼대원은 토끼기장을 달고, 대장의 지도하에 소정의 토끼과정을 이수한다. (개정 04. 12. 16.)

제8조(사슴과정)

① 사슴과정은 만 9~10세 소년·소녀들에게 주어지는 기준과정으로써 10개의 취미장 활동을 마치도록 권장하며,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개정 15. 7. 2.)

② 컵스카우트 사슴대원은 사슴기장을 달고, 대장의 지도하에 소정의 사슴과정을 이수한다. (개정 04. 12. 16.)

제9조(곰과정)

① 곰과정은 만 10~11세의 소년·소녀들에게 주어지는 기준과정으로써 10개의 취미장 활동을 마치도록 권장하며,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개정 15. 7. 2.)

② 컵스카우트 곰대원은 곰기장을 달고, 대장의 지도하에 소정의 곰과정을 이수한다. (개정 04. 12. 16.)

제10조(무지개과정)

① 무지개과정은 만 11~12세의 소년·소녀들에게 주어지는 기준과정으로써 10개의 취미장 활동을 마치도록 권장하며,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개정 15. 7. 2.)

② 컵스카우트 무지개 대원은 무지개기장을 달고, 대장의 지도하에 소정의 무지개과정을 이수한다. (개정 04. 12. 16.)

③ 무지개 급위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표3의 승진과정을 모두 마친 대원은 스카우트 □벤처스카우트 진보과정의 초급스카우트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15. 7. 2.)

제11조(도중 입대 컵스카우트 대원) 컵스카우트 다람쥐 대원 급위의 연령을 초과한 대원이 도중에 입대하고자 할 때에는 선서를 한 다음 자신이 생활하는 연령의 진급기장을 패용하고 해당 급위의 기준과정을 이수한다. (개정 15. 7. 2.)

제2절 취미장 과정

제12조(취미장 과정) ① (삭제 15. 7. 2.)

② 다람쥐, 토끼, 사슴, 곰, 무지개 급위의 컵스카우트 취미장 과정은 표3의 10가지 50개 활동으로 구성된다. (개정 15. 7. 2.)

- ③ (삭제 09. 9. 29.)
- ④ (삭제 09. 9. 29.)
- ⑤ (삭제 09. 9. 29.)
- ⑥ 전 제2항의 컵스카우트 취미장과정은 표 3과 같다.

제13조(취득방법) (개정 04. 12. 16.)

- ① 컵스카우트는 연령별 진급제이므로, 보 중심으로 각 급위가 함께 연중 대활동 계획에 의거 표3의 활동을 실시한 후, 각 급위별로 다람쥐는 하늘바탕, 토끼는 노랑바탕, 사슴은 연두바탕, 곰은 보라 바탕, 무지개는 주황 바탕의 급위별 해당 과목 취미장을 취득한다. (개정 15. 7. 2.)
- ② 취미장 기장 5개를 취득하면 취미장 5개를 표시하는 화살촉 기장을 취득한다.
- ③ 컵스카우트 취미장 취득은 대활동 계획에 의해 이수하고, 대장이 이를 확인하여 취득한다.

제3절 세계자연보호장 과정 (삭제 11. 12. 1.)

제14조(세계자연보호장 과정) (삭제 11. 12. 1.)

제3장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진보과정

제1절 진급과정

- 제15조(초급스카우트 과정) ① 초급스카우트 과정은 스카우트 대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소년·소녀들에게 주어지는 스카우트의 기본적인 과정을 말한다. (개정 09. 12. 11.)
- ② 초급스카우트가 되려면 만 12세 이상의 소년·소녀로서, 반(조)장의 협조 하에 초급스카우트 과제를 이수하고 대장(또는 대장이 지정하는 성인지도자)이 실시하는 진급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삭제 15. 7. 2.)
 - ③ 컵스카우트 무지개 급위에서 초급스카우트로 진급한 대원은 초급스카우트 진급과제 전 과정과 진급면접고사를 면제한다. (신설 15. 7. 2.)
 - ④ 초급스카우트 진급과정은 표 5와 같다. (신설 11. 12. 1.)

제16조(2급스카우트 과정) ① 2급스카우트가 되려면 입대등록을 한 후 초급스카우트로서 2개월 동안 반(조) 및 대 활동 등 제 집회에 80% 이상 참석하였음을

(진보과정 규정)

출석기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 ② 초급스카우트로 있는 동안에 연소지도자{(도반(영조)장, 부도반(부영조)장, 반(조)장}의 협조 하에 2급스카우트 과제를 이수하고, 대장(또는 대장이 지정하는 성인지도자)이 실시하는 2급 진급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 ③ 필수기능장 중 시민장, 하이킹장을 취득한다. (개정 09. 12. 11.)
- ④ 2급스카우트 진급과정은 표 5와 같다.

제17조(1급스카우트 과정) ① 1급스카우트가 되려면, 2급스카우트로서 3개월 동안 반(조) 및 대 활동 등 제 집회에 80% 이상 참석하였음을 출석기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 ② 2급스카우트로 있는 동안에 반(조)원들과 협조하여 1급스카우트 과제를 이수하고, 대장(또는 대장이 지정하는 성인지도자)이 실시하는 1급 진급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 ③ 필수기능장 중 응급처치장, 야영장, 야외취사장, 측정지도장과 일반기능장 중에서 1종을 선택하여 5종의 기능장을 취득한다. (개정 09. 12. 11.)
- ④ 1급스카우트 진급과정은 표 5와 같다.

제18조(별스카우트 과정) ① 별스카우트가 되려면 1급스카우트가 된 후 4개월 동안 반(조) 및 대 활동 등 제 집회에 80% 이상 참석하였음을 출석기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 ② 1급스카우트로 있는 동안에 반(조)원들과 협조하여 별스카우트 과제를 이수하고, 대장(또는 대장이 지정하는 성인지도자)이 실시하는 별스카우트 진급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 ③ 필수기능장 중 전통예절장, 안전장, 개척장과 일반기능장 중에서 2종을 선택하여 5종의 기능장을 취득한다. (개정 09. 12. 11.)
- ④ 별스카우트 진급과정은 표 5와 같다. (신설 11. 12. 1.)

제19조(무궁화스카우트 과정) ① 무궁화스카우트가 되려면, 별스카우트가 된 후 5개월 동안 반(조) 및 대 활동 등 제 집회에 80% 이상 참석하였음을 출석기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 ② 별스카우트로 있는 동안에 대장과 협조하여 무궁화스카우트 과제를 이수하고, 대장(또는 대장이 지정하는 성인지도자)이 실시하는 무궁화스카우트 진급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 ③ 필수기능장 중 수영장, 환경보전장, 세계우애장과 일반기능장 중에서 3종을 선택하여 6종의 기능장을 취득한다. (개정 09. 12. 11.)

④ 무궁화스카우트 진급과정은 표 5와 같다. (신설 11. 12. 1.)

제20조(범스카우트 과정) ① 범스카우트가 되려면 무궁화스카우트가 된 후 6개월 동안 반(조) 및 대 활동 등 제 집회에 80% 이상 참석하였음을 출석기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② 무궁화스카우트로 있는 동안에 대장과 협력하여 범스카우트 과제를 이수하고 대장(또는 대장이 인정하는 성인지도자)이 실시하는 범스카우트 진급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09. 12. 11.)

③ 필수기능장 중 학업장, 구조장, 생존장과 일반기능장 중에서 3종을 선택하여 6종의 기능장을 취득한다. (개정 09. 12. 11.)

④ 범스카우트 진급과정은 표5와 같다.

제21조(진급고사) ① 진급고사는 대장과 부대장의 협조하에 과정을 이수하고, 대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진급고사는 전 과정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합격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이수하여 고사를 실시하며, 전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진급면접) ① 진급면접은 대위원회내에 구성된 진급면접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된다.

② 진급면접은 재 고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급위의 과정에 따른 활동을 충실하게 실천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범스카우트 진급면접은 지방·특수연맹 면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09. 11. 13.)

④ 지방·특수연맹 면접위원회 구성은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커미셔너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09. 11. 13.)

제23조(진급인가) 진급고사의 면접을 필한 단위대 진급면접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인가하고, 대장은 지체 없이 지구연합회를 경유하여 지방·특수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진급일자는 대장이 서명한 날로 한다. (개정 09. 11. 13.)

제24조(진급증서 발급) ① 진급증서는 대장 명의로 서명하여 발급한다. (개정 09. 12. 11.)

② 범스카우트 진급증서는 범스카우트 메달과 함께 중앙본부에서 총재 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00. 12. 8.)

제2절 기능장 과정

제25조(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기능장 과정)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기능장 과정은 11개 부문 95종으로 구분하며 과정 내용은 표 6과 같다. (개정 09. 12. 11.)

제26조(기능장 상담강사) ① 기능장 상담강사는 육성단체대표가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감화를 줄 수 있는 인사에게 위촉한다.

② 기능장 상담강사는 1인 1개 종목의 기능장 자문 및 지도와 심사,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 3개 종목까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기능장 수련 방법) 기능장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 방법은 대원 개개인의 실제활동을 통한 체험에 의하여 해당 과정을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며, 이론에 의한 방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8조(기능장 과정의 수련 절차) ① 기능장은 1인의 대원이 동일기간 내에 5개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기능장 수련의 종류는 대원 각자의 선택에 따라 대장의 안내로 기능장 상담강사에게 소개되고, 기능장 상담강사는 해당 기능장 종류의 수련절차를 안내한 다음 소정의 과정을 기능장 상담강사의 지도와 협조 하에 수련한다.

제29조(기능장과정의 면접) 기능장 과정을 수련한 대원에 대한 면접은 담당 기능장 상담강사가 실시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장에게 통보한다.

제30조(기능장의 인가) 기능장 상담강사로부터 면접 확인통보를 접수한 대장은 이를 인가하고, 기능장 과정집에 서명 날인한 후 지체 없이 지구연합회를 경유하여 지방·특수연맹에 보고한다. 다만, 인가일자는 대장이 서명 날인한 날로 한다. (개정 09. 12. 11.)

제31조(기능장 취득 구분) 기능장은 2급 스카우트 과정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04. 12. 16.)

제5장 (삭제 99. 12. 17.)

진급과정 과목 일람표

(진보과정 규정)

구 분	과정명	해당교본	쪽 수(삭제 11. 12. 1.)
표1	컵스카우트 준비과정	컵스카우트	(삭제 11. 12. 1.)
표2	컵스카우트 다람쥐 급위내용	컵스카우트 다람쥐	(삭제 11. 12. 1.)
표3	컵스카우트 취미과정	컵스카우트	(삭제 11. 12. 1.)
표4 (삭제 11. 12. 1.)	(삭제 11. 12. 1.)	(삭제 11. 12. 1.)	(삭제 11. 12. 1.)
표5	스카우트 진급과정	스카우트	(삭제 11. 12. 1.)
표6	스카우트 기능장과정	스카우트	(삭제 11. 12. 1.)

(개정 11. 12. 1.)

부 칙

1. 이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76년 5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78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4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5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86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경과 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진급 및 기능장은 이 규정에 의한 내용과 절차에 의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9. 이 규정은 1987년 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8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1989년 2월 28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이 규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진보과정 규정)

2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3.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4. 이 규정은 2015년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5.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